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5년 11월 26일(목) ~ 12월 4일(금), 9일간

3. 감사 대상기관

❍ 감사기관 :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사무위탁 기관 또는 단체

※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4. 특별위원회 구성

가. 감 사 반

❍ 위원장 : 1명

❍ 간 사 : 1명

❍ 위 원 : 4명

나. 사무보조

❍ 전문위원 이용섭외 4명

〔전문위원 오정희, 지방행정 7급 김혜영, 기록원 최영희, 지경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감 사 대 상 부 서	장 소
11.26(목)	10:00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의 회 소회의실
11.27(금)	10:00	◦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의 회 소회의실
11.28(토)		◦ 감사활동 자료수집	
11.29(일)			
11.30(월)	10:00	◦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의 회 소회의실
12. 1(화)	10:00	◦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사업과	의 회 소회의실
12. 2(수)	10:00	◦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의 회 소회의실
12. 3(목)	10:00	◦ 읍·면 및 현지확인(보충감사)	의회 소회의실(현지)
12. 4(금)	11:00	◦ 강 평	의 회 소회의실

6. 감사의 범위 및 주요감사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처리된 사무전반

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나.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항

다.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현황

라. 주민여론 및 민원 처리상황

마.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업무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가. 보고요구 : 별첨 1 보고요구서에 의함

나. 증인 출석요구 : 별첨 2 증인 출석요구서에 의함

다. 서류(자료)제출요구 : 별첨 3 서류제출 요구서에 의함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

-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답변
- ❍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 ❍ 출석 증인신문 및 의견진술 청취 등
- ❍ 필요시 감사대상 현장 확인

나. 감사 진행순서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위원장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부군수
⇩		
출석공무원선서	----------	집행기관(별첨4)
⇩		
해당부서담당소개	----------	집행기관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집행기관
⇩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	의회·집행기관
⇩		
서류 및 현지확인, 증언이나 의견청취(필요시)	----------	의회·집행기관
⇩		
감사결과 강평	----------	위원장
⇩		
감사종료선언	----------	위원장

다. 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 감사종료 후 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 제출

❍ 의견서를 기초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 제출 : 위원장 → 의장

❍ 감사결과 보고서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의회 → 군

❍ 시정 및 처리결과 통보 : 군 → 의회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 의원에게 배부

9. 행정사항

❍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 제출부수 : 17부

– 보고내용(감사실시전 실·과·소·단장 보고)

· 일반현황(직제 및 직원현황, 소관업무, 각종통계)

· 2015년도 주요업무(시책) 추진상황(예산, 비예산 등)

❍ 감사자료 제출

– 제출부수 : 17부

– 자료내용 : **별첨 요구목록 참조**

※ 2015년도 모든 자료 기준은 10월 31일 기준 적용

– 자료제출 : 2015. 11. 20(금)(기획감사실 취합 → 의회)

※ 중복 요구된 목록에 대하여는 일괄 작성

❍ 증인선서문 제출

– 해당수감일자 선서 후 위원장에게 제출

❍ 감사장소 : 평창군의회 소회의실(3층)

【별첨1】

보 고 요 구 서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업무보고
2. 보고기간 : 2015년 11월 26일 ~ 12월 4일
3. 보고장소 : 의회 소회의실
4.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보고자료 제출 : 2015. 11. 20. 12:00한
   나. 보고일시 및 대상공무원 : 별첨

2015년 11월 11일

평 창 군 의 회 의 장

□ 보고일시 및 대상공무원

보고일시	인원	대 상 공 무 원	비 고
11. 26(목) 10:00	5	○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11. 27(금) 10:00	5	○ 군수, 부군수, 종합민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11. 30(월) 10:00	5	○ 군수, 부군수, 경제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	
12. 1(화) 10:00	6	○ 군수, 부군수, 안전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보건사업과장	
12. 2(수) 10:00	6	○ 군수,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12. 3(목) 10:00	27	○ 군수, 부군수, 실・과・소・단장 ○ 읍・면장 ○ 현지확인(보충감사)	
12. 4(금) 11:00	19	○ 군수, 부군수, 실・과・소・단장 ○ 강 평	

【별첨2】

증인 출석 요구서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15. 11. 26 ~ 12. 4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장(붙임)
3. 신문사항(질의): 소관별 감사대상 질의·답변
4.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출석일시 및 대상공무원 : 별첨

2015년 11월 11일

평 창 군 의 회 의 장

□ 출석일시 및 대상공무원

보고일시	인원	대 상 공 무 원	출석 장소
11. 26(목) 10:00	5	○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장
11. 27(금) 10:00	5	○ 군수, 부군수, 종합민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감사장
11. 30(월) 10:00	5	○ 군수, 부군수, 경제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	감사장
12. 1(화) 10:00	6	○ 군수, 부군수, 안전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보건사업과장	감사장
12. 2(수) 10:00	6	○ 군수,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장
12. 3(목) 10:00	27	○ 군수, 부군수, 실・과・소・단장 ○ 읍・면장	감사장 (현지)
12. 4(금) 11:00	19	○ 군수, 부군수, 실・과・소・단장	감사장

【별첨3】

서 류 제 출 요 구 서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가. 소관별 사무처리 상황(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사항
   ("첨부" 목록참조)
2. 제출기한 : 2015. 11. 20(금) 12:00
3. 제출장소 : 평창군의회
4.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제출부수 : 17부(*자료화일 첨부)
   나. 서류작성・편철
   ○ 작성 : A4용지・좌철(서류사본 제외)
   ○ 편철 : 목차(페이지 및 색인표시)에 의하여 실과소 단위분철

2015년 11월 11일

평 창 군 의 회 의 장

【별첨4】

선 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 11 . .

직 위 :
성 명 : (서명)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